

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2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3)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4) 부모교육의 대상, 내용,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~ 제8조).
- 5)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-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,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,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(안 제2조)

나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다)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-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
라) 부모교육의 대상, 내용,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.

-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함

마)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3) 검토 의견

○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교육내용에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음.

○ 부모의 지식, 자질,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부모가 가져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양육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